## KOSHA GUIDE

C - 86 - 2018

- (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당해 목적에만 사용토록 하고,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6)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제2017-36호, '17.7.1)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점검표 (Check List)에 의해 점검하고 의견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점검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토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건설기술진흥법」규정에 의한 거푸집동바리,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비계 등의 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 작성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안전 보건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 교육)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 교육실시 결과는 교육내용,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과 함께 교육실시 보고서를 작성, 결재, 보관